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제58호 |
|------|------|

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경제문화국장       |
| 제출연월일 | 2023. 4. 11. |

예산실장 심사필

#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58호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3. 4. 11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 
제안설명자 : 체육진흥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포함되는 신규 체육 시설이 추가 준공됨으로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.
- 나.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조(정의)에서 “군인”에 대한 정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폐지되었거나 폐지 예정인 “전투·의무경찰”, “경비교도대원”, “의무소방원” 등으로 구분된 용어를 삭제하여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용어에 혼선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  
(안 제2조제12호)
- 나.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3조(명칭 및 위치) 및 제11조(사용료)에 따라 관리하는 체육시설(별표1, 별표2) 관련하여 신규 체육시설(탑정 시민체육공원)이 추가 준공됨(‘22.10.)으로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3조 관련 시설 명칭 및 제11조 관련 사용료에 추가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.  
(안 제3조 별표1, 안 제11조 별표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3115(2023. 3. 28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복지정책과-9228(2023. 3. 20.)호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2847(2023. 3. 8.)호]
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 - 가) 예고기간 : 2023. 3. 9. ~ 2023. 3. 29. (20일 이상)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체육진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0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전투·의무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”을 “사회복무요원 등 포함”으로 한다.

제17조 제1항 제5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별표 1의 연무 체육공원란 다음에 탐정시민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탐정시민체육공원 | 축 구 장   | 부적면 탐정리 475-2번지<br>외 4필지 |
|          | 풋살(축구)장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야 구 장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파크골프장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그라운드골프장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체 육 진 흥 과 장 | 김 일 규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체육시설운영팀장    | 남 기 훈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      | 김 정 현<br>(746-8412) |

[별표 2]

사용료(제11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시 설 물                  | 사용 구분         | 사 용 료        |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공휴일<br>· 토요일 | 평일      |  |
| 체 육 관<br>(연무)          | 체 육 경 기       | 40,000       | 30,000  | · 1일 1회 4시간이내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체육경기 이외       | 70,000       | 60,000  |  |
| 축 구 장<br>(연무)          | 체 육 경 기       | 60,000       | 40,000  | □ 축구·풋살<br>· 2시간기준(정규1게임)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<br>□ 야 구<br>· 3시간기준(정규1게임)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체육경기 이외       | 120,000      | 100,000 |  |
| 축 구 장<br>풋 살 장<br>(탑정) | 축구·풋살 경기      | 60,000       | 40,000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축구·풋살경기<br>이외 | 120,000      | 100,000 |  |
| 야 구 장<br>(탑정)          | 야 구 경 기       | 60,000       | 40,000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야구경기 이외       | 120,000      | 100,000 |  |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|
| 1.~9. (생 략)  | 1.~9. (현행과 같음)  |
| 10. "어린이"란 초등학교 학생과 <u>만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</u> 을 말한다.   | 10. -----<br><u>6세</u>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(생 략)  | 11. (현행과 같음)  |
| 12. "군인"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 등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( <u>전투·의무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</u> )을 말한다.  | 12. -----<br>----- (사회복무요원 등 포함)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|
| 13.~15. (생 략)  | 13.~1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7조(입장권)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. | 제17조(입장권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| 1.~4. (생 략)  | 1.~4. (현행과 같음)  |
| 5. 보호자가 있는 <u>만 6세</u>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  | 5. ----- <u>6세</u>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|

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휴대한 사람

② (생략)

[별표 1] **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.**

| 명 칭      |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무 체육공원 | 축 구 장     | 연무읍 연무로 166번길 64 |
|          | 테 니 스 장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게 이 트 볼 장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체 육 관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공 도 장     | 연무읍 연무로 166번길 58 |
| <신 설>    | <신 설>     | <신 설>            |

[별표 2] **사용료(제11조제1항 관련)**

(단위 : 원)

| 시설물   | 사용 구분   | 사 용 료    |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|
|       |         | 공휴일. 토요일 | 평일      |   |
| 체 육 관 | 체육경기    | 40,000   | 30,000  | · 1일 1회 4시간이내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  |
|       | 체육경기 이외 | 70,000   | 60,000  |   |
| 축 구 장 | 체육경기    | 60,000   | 40,000  | · 3시간기준 (정규게임)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 |
|       | 체육경기 이외 | 120,000  | 100,000 |   |

-----  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**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**

| 명 칭          |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 무 체육공원     | 축 구 장     | 연무읍 연무로 166번길 64      |
|              | 테 니 스 장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게 이 트 볼 장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체 육 관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공 도 장     | 연무읍 연무로 166번길 58      |
| 탑 정 시 민 체육공원 | 축 구 장     | 부적면 탑정리 475-2번지 외 4필지 |
|              | 풋 살 장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야 구 장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파 크 골 프 장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그라운드골프장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2] **사용료(제11조제1항 관련)**

(단위 : 원)

| 시설물        | 사용 구분       | 사 용 료    |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| 공휴일. 토요일 | 평일      |   |
| 체 육 관 (연무) | 체육경기        | 40,000   | 30,000  | · 1일 1회 4시간이내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체육경기 이외     | 70,000   | 60,000  |   |
| 축 구 장 (연무) | 체육경기        | 60,000   | 40,000  | □ 축구· 풋살<br>· 2시간기준 (정규게임)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 |
|            | 체육경기 이외     | 120,000  | 100,000 |   |
| 축 구 장 (탑정) | 축구·풋살 경기    | 60,000   | 40,000  | □ 야구<br>· 3시간기준 (정규게임)<br>· 야간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     |
|            | 축구·풋살 경기 이외 | 120,000  | 100,000 |   |
| 야 구 장 (탑정) | 야구경기        | 60,000   | 40,000  |   |
|            | 야구경기 이외     | 120,000  | 100,000 |   |

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1조(사용료)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·이용(연습)·방송·상업(상행위)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하며, 그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.

### 2. 비용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

#### 나. 추계결과

- 2023년 세입예상액 : 25,200,000원
  - 산출근거 : 시설사용료 월 2,100,000원 × 12월 = 25,200,000원

### 3. 작성자

체육진흥과장 김 일 규

### 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3년) | 2차년도<br>(2024년) | 3차년도<br>(2025년) | 4차년도<br>(2026년) | 5차년도<br>(2027년) | 계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126,000 |
| 세외수입      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126,000 |
| 세 출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126,000 |
| 의존<br>재원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부세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자체<br>수입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126,000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25,200          | 126,000 |
| 지방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기 금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기 타<br>(채무부담, 민자 등)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

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□ 「행정기본법」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